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66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강경숙 · 신장식 · 박은정  
임호선 · 이해민 · 김재원  
김문수 · 서왕진 · 문정복  
진선미 · 김준형 · 최혁진  
차규근 · 황운하 · 정춘생  
백선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

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요양기관, 대행청구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표”를 “6개월간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부

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공표의 절차·방법”을 “공표의 절차”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해당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다른 게시판 등에도 게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추가적인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97조의2(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요양기관, 대행청구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u></p> |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정한다.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

-----  
-----  
-----  
-----  
-----  
-----  
-----  
-----  
-----  
-----  
-----6개월  
간 공표-----, -----  
-----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해당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게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다른 게시판 등에도 게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  
양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추가적인 공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  
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공표의 절차  
-----  
-----  
-----.